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76	4년	20	6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시장확대형		732	3년	3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시장대응형		271	2년	5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231	1.5년	2	75%	1차	4월	4월	6월
							2차	6월	6월	8월
	TIPS	일반형	568	2년	5	75%	상반기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딥테크	210	3년	15	75%	상반기			
							하반기			
글로벌	140	3년	12	75%	상반기					
					하반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		16.5	2년	6.6	75%	-	7월	7월	9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214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R&D	102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산연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92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R&D	42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137	2년	7.0	75%	상반기	1월	1월	3월
	지역기업 역량강화		78	2년	2.0	75%	상반기	1월	1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52	3년	기준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5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42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5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1년	최대 0.14	10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1 정책방향

- ① 전략기술분야에 신규과제를 집중 투입하고, 과제 목표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토록 하는 등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지원
- ② 다수 기업에게 파급효과 미치는 공동효과형 R&D, 글로벌해외연구소와 현지공동 R&D 등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 추진
- ③ 기존 출연R&D를 보완·고도화하여 민간투자·용자 방식 등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6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 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8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9 관련 법령 및 규정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원규모 : 5,680억 원(신규 1,179억 원, 계속 4,501억 원)

□ 지원대상 :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76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 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 원)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3년, 36억 원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원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5,960.1억 원(신규 1,149.8억 원, 계속 4,810.3억 원)

□ **지원대상**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지원내용

- ① 디딤돌(231억 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글로벌 기술 등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견인할 기술을 선별·집중 지원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向 기술개발, 여성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Seed Tech 확보를 위한 R&D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 (부처협력)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등 부처별 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발굴·선별된 우수 스타트업 대상 R&D 연계지원 강화
- ② TIPS(918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TIPS	일반형	최대 2년, 5억 원		
	딥테크	최대 3년, 15억 원		
	글로벌	최대 3년, 12억 원		

(3)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 16.5억 원(신규 16.5억 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I, 선택)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2개사 이상)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이하 제조업)의 제조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 안전센서,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 모니터링 제품, 로봇 개발,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
- (실증) R&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도입기업의 Test-Bed를 활용한 실증 및 성능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촉진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 고용노동부 협의(23년)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10개 업종의 주요 사고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총 4개의 품목**으로 구성

** ① 작업자 행동기반 장비 및 솔루션, ②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③ 화재·폭발·누출·질식 해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④ SI기반 통합 점검·진단 솔루션

(4)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570억 원(신규 451억 원, 계속 119억 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과제유형	· 개별과제(1:1 협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과제1</th> <th>과제2</th> <th>과제N</th> </tr> <tr> <td>주관 (기업)</td> <td>주관 (기업)</td> <td>주관 (기업)</td> </tr> <tr> <td>공동 (대학)</td> <td>공동 (연구소)</td> <td>공동 (대학)</td> </tr> </table>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 (기업)	주관 (기업)	주관 (기업)	공동 (대학)	공동 (연구소)	공동 (대학)	·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3">컨소시엄형 과제 A</th> </tr> <tr> <th>세부 과제1</th> <th>세부 과제2</th> <th>세부 과제N</th> </tr> <tr> <td>주관 (기업)</td> <td>주관 (기업)</td> <td>주관 (기업)</td> </tr> <tr> <td>공동 (대학)</td> <td>공동 (연구소)</td> <td>공동 (연구소)</td> </tr> </table>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 과제1	세부 과제2	세부 과제N	주관 (기업)	주관 (기업)	주관 (기업)	공동 (대학)	공동 (연구소)	공동 (연구소)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 (기업)	주관 (기업)	주관 (기업)																					
공동 (대학)	공동 (연구소)	공동 (대학)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 과제1	세부 과제2	세부 과제N																					
주관 (기업)	주관 (기업)	주관 (기업)																					
공동 (대학)	공동 (연구소)	공동 (연구소)																					
분야	· 제한 없음	·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1단계(예비연구)	8개월, 2억 원이내	75% 이내	분야지정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일반형 (산학협력, 산연협력)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 원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5)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 지원규모 : 215.6억 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 지원내용

- 주력산업생태계구축(137.2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 지원
- 지역기업역량강화(78.4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최대 2년, 연 7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지역기업 역량강화	최대 2년, 연 2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62억 원, 계속 179억 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52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 (Level 1)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50% 이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50% 이내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400만 원/년	100% 이내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혁신과	(창업성장사업실)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기술개발과	(전략협력사업실)
		사업화R&D		
	산연협력	예비연구		
		사업화R&D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특화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지역기업역량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정책기획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 2) 담당 부서 및 전문(관리)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